

第227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2月25日(月)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議事日程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발의)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추미애 의원 발의)
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발의)
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
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1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1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1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委員會案)
13. 장기거주의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관한특례법안
14.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퇴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박상천 의원 소개)
15.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퇴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박상천, 정대철 의원 소개)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17. 政黨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
18. 政黨法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19. 政黨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20. 政黨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1.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22.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委員會案)
23.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에관한청원
24. 정치관련법개정에관한청원
25.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이재정 의원 소개)
26.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임종석 의원 소개)
27.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9.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30. 國會法中改正法律案(장태완 의원 대표발의)
31.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32.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33.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3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35.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3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
37.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3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양희 의원 발의)
39.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40.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41. 國會法中改正法律案(박원홍 의원 대표발의)
42.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43. 國會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44. 國會法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
4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4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47. 國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
48.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49.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50.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51.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
52.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53.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5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5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
56.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57. 人事聽聞會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58. 人事聽聞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59. 人事聽聞會法中改正法律案(최연희 의원 발의)
60. 人事聽聞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
61. 인사청문회법제정에 관한청원
62. 국회법개정에 관한청원(김문수 의원 소개)
63. 보훈및제대군인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청원
64. 국회법개정에 관한청원(이연숙 의원 소개)

審査된案件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沈在哲·安泳根·安澤秀·朴明煥·金洪信·洪思德·尹漢道·林鎭出·孫希姪·元喜龍·金鍾河·河舜鳳·金浩一·朴鍾熙·黃勝敏·金成鎬·崔榮熙·李性憲·嚴虎聲·任太熙·鄭柄國·吳世勳 의원 발의) 6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강숙자·강신성일·강창희·권기술·김덕배·김윤식·김정숙·김태호·김학송·남경필·맹형규·박상희·박승국·박시균·박재욱·박창달·백승홍·서상섭·서정화·서청원·손희정·송광호·송훈석·심규철·안경률·안영근·오세훈·오장섭·유홍수·윤영탁·이원형·이윤성·이재선·이재오·이해봉·이희규·임진출·정진석·조용규·조희욱·하순봉 의원 발의) 6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발의)(전갑길 의원 외 30인 발의) 6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윤경식·윤한도·김학송·강현욱·김근태·이인기·김부겸·서정화·최선영·유재건·신현태·강삼재·황승민·김형오·이상득·오세훈·이주영·김라기·김원웅·김용학·박혁규·박희태·허운나·이완구·민봉기·김성조·장정언·남궁석·박시균·이상배·

박세환·박종근·고흥길·박종웅·김찬우·하순봉·박승국·이방호·남경필·박주천·권태망·윤두환·이재오·박재욱·이원형·손희정·현승일·유재규·원유철·김영배·강신성일 의원 외 2인 발의) 6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추미애 의원 발의)(추미애 의원 외 20인 발의) 6

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발의)(권태망 의원 외 20인 발의) 6

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강제섭 의원 대표발의)(강제섭·고흥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박승국·안상수·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5인 발의) 6

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이상수·장성원·함승희·김택기·김성호·송훈석·박종우·정세균·김성순·박주선·원유철·이낙연·추미애·송석찬·신기남·송영길·조배숙·박병석·이재정·조재환·김민석 의원 외 95인 발의) 6

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강신성일·강창성·강창희·김락기·김일윤·김정숙·김찬우·박관용·박세환·박시균·박희태·손희정·신영균·임태희·정병국·정의화·정재문·최병렬·하순봉·홍사덕·황우여 의원 외 114인 발의) 6

1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제섭·고흥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7

1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1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委員會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13. 장기거주의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관한특별법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배기선·정대철·정균환·이해찬·유삼남·유재건·이미경·김영환·조성준·함승희 의원 외 108인 발의) 7

14.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조기퇴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박상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7

15.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조기퇴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박상천·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17. 政黨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이상수·장성원·함승희·김택기·김성호·송훈석·박종우·정세균·김성순·박주선·원유철·이낙연·추미애·송석찬·신기남·송영길·조배숙·박병석·이재정·조재환·김민석 의원 외 95인 발의) 7

18. 政黨法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강제섭·고흥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7

19. 政黨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오세훈·김근태·김락기·김부겸·김성조·김영춘·김용학·남경필·박인상·박종희·신계륜·신현대·심재철·안영근·안택수·권오을·원희룡·윤경식·이성현·이승철·이연숙·이주영·정병국·정의화·홍준표 의원 발의) 7

20. 政黨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허은나·유재건·김근태·김효석·배기운·최영희·김성순·김덕규·김원웅·박병석·박양수·원유철·추미애·이종걸·김운용·최명현·이낙연·이강래·신기남·천정배·정범구·신계륜·김명섭·안영근·정대철·장영달·장성원·정세균·김민석·정동영·조배숙·정동채 의원 발의) 7

21.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22.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委員會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23.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에관한청원(정균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24. 정치관련법개정에관한청원(이연숙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7

25.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26.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임종석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 7

27.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金洪信·權五乙·權哲賢·金文洙·金榮煥·金元雄·南景弼·孟亨奎·李美卿·李在五·金富謙·金成鎬·金榮春·金宅起·文錫鎬·徐相燮·孫希姪·宋永吉·沈在哲·吳世勳·元喜龍·李浩雄·任鍾哲·全在姬·鄭柄國 의원 발의) 7
28.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沈在哲·安泳根·安澤秀·朴明煥·金洪信·洪思德·尹漢道·林鎮出·孫希姪·元喜龍·金鍾河·河舜鳳·金浩一·朴鍾熙·黃勝敏·李允盛·鄭寅鳳·李性憲·嚴虎聲·任太熙·鄭柄國·吳世勳 의원 발의) 7
29.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강현욱·김경천·김근태·김덕규·김명섭·김민석·김부겸·김성순·김영환·김운용·김택기·문희상·박병석·박용호·배기운·송훈석·신기남·이강래·이근진·이창복·장정언·전용학·정장선·한명숙 의원 발의) 7
30. 國會法中改正法律案(장태완 의원 대표발의)(장태완·강창성·박세환·유삼남 의원 외 82인 발의) 7
31.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김영춘·김홍신·오세훈·김호일·안영근·권오을·서정화·서상섭·이규택·김락기·윤경식·김영구·정인봉·정의화·정병국·조정무·원희룡·신현대·심규철·황우여 의원 발의) 7
32.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안상수 의원 외 132인 발의) 7
33.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김용학 의원 외 132인 발의) 8
3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서정화·박혁규·강삼재·황승민·임인배·윤영탁·정의화·이재오·정문화·엄호성·안택수·권태망·박세환·정인봉·김호일·박명환·김부겸·신현대·현승일·이윤성·박창달·윤한도·이인기·안경률·김만제·조용규·강재섭·이원창·박헌기·임진출·권오을·조정무·안상수·이연숙 의원 외 98인 발의) 8
35.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전재희·이미경·김경천·이종걸·한명숙·정병국·유성근·심재철·손희정·박근혜·강신성일·허운나·김정숙·정문화·김희선·강숙자·김방림·최영희·정몽준 의원 발의) 8
3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정균환·이양희 의원 외 133인 발의) 8
37.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강삼재·임태희·김정숙·원희룡·김호일·이강두·유성근·손태인·안경률·이인기·김학송·박창달·남경필·박희태·정형근·최병렬·이성현·서청원·김형오·김문수·이병석·박관용·나오연·도종이·박종근·강재섭·권태망 의원 발의) 8
3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양희 의원 발의)(이양희 의원 외 19인 발의) 8
39.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권오을·김문수·김용학·김원웅·김정숙·박세환·손태인·신영균·안경률·안영근·이원형·이인기·이주영·임태희·정인봉·정재문·정형근·주진우·허태열·황우여 의원 외 112인 발의) 8
40.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이강두·권오을·김원웅·신영국·이한구 의원 외 128인 발의) 8
41. 國會法中改正法律案(박원홍 의원 대표발의)(박원홍·박주천·임진출·김문수·오세훈·김정숙·박근혜·나오연·조용규·김영환·정동영·김덕룡·윤영탁·이상희·이성현·허운나·최병렬·강재섭·김효석·남궁석·서상섭·곽치영·김중하·심재권·윤경식·김희선·권철현·윤한도·이방호·이부영·강숙자·김용학·안영근·김영춘·정장선·안택수·권기술 의원 발의) 8
42.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권기술·심재권·정장선·김희선·김민석·김부겸·장성민·김명섭·이재정·김근태·김원웅·정병국·오세훈·서상섭·이원형·이부영·추미애·김성순·원희룡 의원 발의) 8
43. 國會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오세훈·김동욱·안경률·이종걸·강성구·정장선·이병석·정진석·이강두·손학규·심규철·장성민·남경필·정병국·윤경식·김락기·송영길·강운태·이강래·박종희·이주영·김영춘·신현대·김덕룡·이부영·윤한도·손태인·박근혜·김성조·안영근·심재철·원희룡·김용학·이성현·이승철·이상득·권오을·홍사덕·김부겸·신기남·정의화·김용갑·박시균·이호웅·정인봉·김학송·박세환·김원웅·김정숙·이상희·안택수·홍준표·주진우·박주천·허태열·신경식·임인배·엄호성·장영달·이

미경·이재정·윤영탁·김일윤·박종근·서상섭·박원홍·백승홍·이한구·박종용·윤여준·김홍신·임종석·권기술·김태홍·이희규·윤두환·임진출·이상배·강숙자 의원 발의) 8

44. 國會法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권기술·강재섭·고홍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8

4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이재정·김성호·김태홍·김성순·송광호·안영근·조한천·김명섭·김원기·서상섭·정범구·송영길·신기남·이종걸·조정무·김원웅·이부영·조순형·이강래·박종용·박양수·천정배·추미애 의원 발의) 8

4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박주선·김덕규·박용호·이재정 의원 발의) 8

47. 國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8

48.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강현욱·김경천·김근태·김덕규·김명섭·김민석·김부겸·김성순·김영환·김운용·김택기·문희상·박병석·박용호·배기운·송훈석·신기남·이강래·이근진·이창복·장정언·정장선·한명숙 의원 발의) 8

49.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충조·천정배·조성준·박용호 의원 외 34인 발의) 9

50.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강삼재·임태희·김정숙·원희룡·김호일·이강두·유성근·손태인·안경률·이인기·김학송·박창달·남경필·박희태·정형근·최병렬·이성현·서청원·김형오·김문수·이병석·박관용·나오연·도종이·박종근·강재섭·권태망·강신성일 의원 발의) .. 9

51.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권기술·강재섭·고홍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9

52.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9

53.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강삼재·임태희·김정숙·원희룡·김호일·이강두·유성근·손태인·안경률·이인기·김학송·박창달·남경필·박희태·정형근·최병렬·이성현·서청원·김형오·김문수·이병석·박관용·나오연·도종이·박종근·강재섭·권태망 의원 발의) ... 9

5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정숙·오세훈·이연숙·윤경식·손태인·윤한도·김성조·손희정·강창성·이윤성·주진우·이방호·박세환·나오연·황승민·박주천·김원웅·권철현·박원홍·박창달·엄호성·이성현·이강두 의원 발의) 9

5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권기술·강재섭·고홍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9

56.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9

57.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沈在哲·安商守·嚴虎聲·元喜龍·李性憲·李秉錫 의원 외 127인 발의) 9

58.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김용학 의원 외 132인 발의) 9

59.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발의)(최연희 의원 외 131인 발의) 9

60. 人事聽聞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9

61. 인사청문회법제정에 관한청원(조순형·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62. 국회법개정에 관한청원(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63. 보훈및제대군인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청원(강창성·장태완·박세환 의원 외 11인의 소개로 제출) 9

64. 국회법개정에 관한청원(이연숙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9

(19시39분 개의)

○委員長 姜在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金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沈在哲·安泳根·安澤秀·朴明煥·金洪信·洪思德·尹漢道·林鎮出·孫希姪·元喜龍·金鍾河·河舜鳳·金浩一·朴鍾熙·黃勝敏·金成鎬·崔榮熙·李性憲·嚴虎聲·任太熙·鄭柄國·吳世勳 의원 발의)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강숙자·강신성일·강창희·권기술·김덕배·김윤식·김정숙·김태호·김학송·남경필·맹형규·박상희·박승국·박시균·박재욱·박창달·백승홍·서상섭·서정화·서청원·손희정·송광호·송훈석·심규철·안경률·안영근·오세훈·오장섭·유홍수·윤영탁·이원형·이운성·이재선·이재오·이해봉·이희규·임진출·정진석·조용규·조희욱·하순봉 의원 발의)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발의)(전갑길 의원 외 30인 발의)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윤경식·윤한도·김학송·강현욱·김근태·이인기·김부겸·서정화·최선영·유재건·신현태·강삼재·황승민·김형오·이상득·오세훈·이주영·김락기·김원웅·김용학·박혁규·박희태·허운나·이완구·민봉기·김성조·장정언·남궁석·박시균·이상배·박세환·박종근·고홍길·박종웅·김찬우·하순봉·박승국·이방호·남경필·박주천·권태망·윤두환·이재오·박재욱·이원형·손희정·현승일·유재규·원유철·김영배·강신성일 의원 외 2인 발의)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추미애 의원 발의)(추미애 의원 외 20인 발의)
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발의)(권태망 의원 외 20인 발의)
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강재섭·고홍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박승국·안상수·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5인 발의)

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이상수·장성원·함승희·김택기·김성호·송훈석·박종우·정세균·김성순·박주선·원유철·이낙연·추미애·송석찬·신기남·송영길·조배숙·박병석·이재정·조재환·김민석 의원 외 95인 발의)
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고홍길 의원 대표발의)(고홍길·강신성일·강창성·강창희·김락기·김일윤·김정숙·김찬우·박관용·박세환·박시균·박희태·손희정·신영근·임태희·정병국·정의화·정재문·최병렬·하순봉·홍사덕·황우여 의원 외 114인 발의)
1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재섭·고홍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1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委員會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3. 장기거주외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 관한특례법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배기선·정대철·정균환·이해찬·유삼남·유재건·이미경·김영환·조성준·함승희 의원 외 108인 발의)
14.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조기퇴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박상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5.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조기퇴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박상천·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 政黨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이상수·장성원·함승희·김택기·김성호·송훈석·박종우·정세균·김성순·박주선·원유철·이낙연·추미애·송석찬·신기남·송영길·조배숙·박병석·이재정·조재환·김민석 의원 외 95인 발의)
18. 政黨法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강재섭·고홍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 19. 政黨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오세훈·김근태·김락기·김부겸·김성조·김영춘·김용학·남경필·박인상·박종희·신계륜·신현대·심재철·안영근·안택수·권오을·원희룡·윤경식·이성현·이승철·이연숙·이주영·정병국·정의화·홍준표 의원 발의)
- 20. 政黨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허운나·유재건·김근태·김효석·배기운·최영희·김성순·김덕규·김원웅·박병석·박양수·원유철·추미애·이종걸·김운용·최명현·이낙연·이강래·신기남·천정배·정범구·신계륜·김명섭·안영근·정대철·장영달·장성원·정세균·김민석·정동영·조배숙·정동채 의원 발의)
- 21.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2.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委員會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3.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에 관한청원(정균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4. 정치관련법개정에관한청원(이연숙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25.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6.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임종석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
- 27.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金洪信·權五乙·權哲賢·金文洙·金榮煥·金元雄·南景弼·孟亨奎·李美卿·李在五·金富謙·金成鎬·金榮春·金宅起·文錫鎬·徐相燮·孫希姪·宋永吉·沈在哲·吳世勳·元喜龍·李浩雄·任鍾哲·全在姬·鄭柄國 의원 발의)
- 28.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沈在哲·安泳根·安澤秀·朴明煥·金洪信·洪思德·尹漢道·林鎭出·孫希姪·元喜龍·金鍾河·河舜鳳·金浩一·朴鍾熙·黃勝敏·李允盛·鄭寅鳳·李性憲·嚴虎聲·任太熙·鄭柄國·吳世勳 의원 발의)
- 29.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강현욱·김경천·김근태·김덕규·김명섭·김민석·김부겸·김성순·김영환·김운용·김택기·문희상·박병석·박용호·배기운·송훈석·신기남·이강래·이근진·이창복·장정언·전용학·정장선·한명숙 의원 발의)
- 30. 國會法中改正法律案(장태완 의원 대표발의)(장태완·강창성·박세환·유삼남 의원 외 82인 발의)
- 31.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김영춘·김홍신·오세훈·김호일·안영근·권오을·서정화·서상섭·이규택·김락기·윤경식·김영구·정인봉·정의화·정병국·조정무·원희룡·신현대·심규철·황우여 의원 발의)
- 32.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안상수 의원 외 132인 발의)
- 33.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김용학 의원 외 132인 발의)
- 3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서정화·박혁규·강삼재·황승민·임인배·윤영탁·정의화·이재오·정문화·엄호성·안택수·권태망·박세환·정인봉·김호일·박명환·김부겸·신현대·현승일·이운성·박창달·윤한도·이인기·안경률·김만제·조용규·강재섭·이원창·박헌기·임진출·권오을·조정무·안상수·이연숙 의원 외 98인 발의)
- 35.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전재희·이미경·김경천·이종걸·한명숙·정병국·유성근·심재철·손희정·박근혜·강신성일·허운나·김정숙·정문화·김희선·강숙자·김방림·최영희·정몽준 의원 발의)
- 3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정균환·이양희 의원 외 133인 발의)
- 37.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강삼재·임태희·김정숙·원희룡·김호일·이강두·유성근·손태인·안경률·이인기·김학송·박창달·남경필·박희태·정형근·최병렬·이성현·서청원·김형오·김문수·이병석·박관용·나오연·도종이·박종근·강재섭·권태망 의원 발의)
- 3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양희 의원 발의)(이양희 의원 외 19인 발의)
- 39.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권오을·김문수·김용학·김원웅·김정숙·박세환·손태인·신영균·안경률·안영근·이원형·이인기·이주영·임태희·정인봉·정재문·정형근·주진우·허태열·황우여 의원 외 112인 발의)
- 40.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이강두·권오을·김원웅·신영국·이한구 의원 외 128인 발의)
- 41. 國會法中改正法律案(박원홍 의원 대표발의)(박원홍·박주천·임진출·김문수·오세훈·김정숙·박근혜·나오연·조용규·김영환·정동영·김덕룡·윤영탁·이상희·이성현·허운나·최병렬·강재섭·김효석·남궁석·서상섭·곽치영·김종하·심

재권·윤경식·김희선·권철현·윤한도·이방호·이부영·강숙자·김용학·안영근·김영춘·정장선·안택수·권기술 의원 발의)

42.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권기술·심재권·정장선·김희선·김민석·김부겸·장성민·김명섭·이재정·김근태·김원웅·정병국·오세훈·서상섭·이원형·이부영·추미애·김성순·원희룡 의원 발의)

43. 國會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오세훈·김동욱·안경률·이종걸·강성구·정장선·이병석·정진석·이강두·손학규·심규철·장성민·남경필·정병국·윤경식·김락기·송영길·강운태·이강래·박종희·이주영·김영춘·신현태·김덕룡·이부영·윤한도·손태인·박근혜·김성조·안영근·심재철·원희룡·김용학·이성현·이승철·이상득·권오을·홍사덕·김부겸·신기남·정의화·김용갑·박시균·이호웅·정인봉·김학송·박세환·김원웅·김정숙·이상희·안택수·홍준표·주진우·박주천·허태열·신경식·임인배·엄호성·장영달·이미경·이재정·윤영탁·김일윤·박종근·서상섭·박원홍·백승홍·이한구·박종웅·윤여준·김홍신·임종석·권기술·김태홍·이희규·윤두환·임진출·이상배·강숙자 의원 발의)

44. 國會法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권기술·강재섭·고흥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4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이재정·김성호·김태홍·김성순·송광호·안영근·조한천·김명섭·김원기·서상섭·정범구·송영길·신기남·이종걸·조정무·김원웅·이부영·조순형·이강래·박종웅·박양수·천정배·추미애 의원 발의)

4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박주선·김덕규·박용호·이재정 의원 발의)

47. 國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8.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강현욱·김경천·김근태·김덕규·김명섭·김민석·김부겸·김성순·김영환·김운용·김택기·문희상·박병석·박용호·배기운·송훈석·신기남·이강래·이근진·이창복·장정언·정장선·한명숙 의원 발의)

49.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충조·천정배·조성준·박용호 의원 외 34인 발의)

50.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강삼재·임태희·김정숙·원희룡·김호일·이강두·유성근·손태인·안경률·이인기·김학송·박창달·남경필·박희대·정형근·최병렬·이성현·서청원·김형오·김문수·이병석·박관용·나오연·도종이·박종근·강재섭·권태망·강신성일 의원 발의)

51.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권기술·강재섭·고흥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5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3.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강삼재·임태희·김정숙·원희룡·김호일·이강두·유성근·손태인·안경률·이인기·김학송·박창달·남경필·박희대·정형근·최병렬·이성현·서청원·김형오·김문수·이병석·박관용·나오연·도종이·박종근·강재섭·권태망 의원 발의)

5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정숙·오세훈·이연숙·윤경식·손태인·윤한도·김성조·손희정·강창성·이윤성·주진우·이방호·박세환·나오연·황승민·박주천·김원웅·권철현·박원홍·박창달·엄호성·이성현·이강두 의원 발의)

5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권기술·강재섭·고흥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56.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7.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沈在哲·安商守·嚴虎聲·元喜龍·李性憲·李秉錫 의원 외 127인 발의)

58.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김용학 의원 외 132인 발의)

59.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발의)

(최연희 의원 외 131인 발의)

- 60. 人事聽聞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 제출)
- 61. 인사청문회법제정에관한청원(조순형·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2. 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3. 보훈및제대군인특별위원회설치에관한청원(강창성·장태완·박세환 의원 외 11인의 소개로 제출)
- 64. 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이연숙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19시41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1항 沈在哲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부터 제64항 李嬾淑 의원 외 2인이 소개한 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64건의 선거관계법, 정당관계법 그리고 국회관계법개정법률안과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1항부터 64항까지의 관계법률과 청원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선거관계법심사소위, 정당관계법심사소위 그리고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鄭文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文和 委員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鄭文和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선거관계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각 당에서 제출한 선거관계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합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둘째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하

고, 넷째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하였으며, 다섯째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추천에 있어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을 위반한 등록 신청은 후보자등록 접수거부 사유 및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후보자등록 신청시 소득세, 재산세 이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일곱째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의 기탁금 반환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로 하였고, 여덟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을 하되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80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며, 아홉째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시 읍·면·동별로 1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째 선거운동용 소품으로는 어깨띠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열 한째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 사진, 학력, 주소 등을 기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수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두째 현수막 제작비, 전화 홍보비, 선거용 홈페이지 관리비를 보전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였으며, 열 셋째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 선거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였고, 열 넷째 선거관리위원, 선거부정 감시단원, 투표표 사무원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열 다섯째 지역구 시·도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또는 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있다가 1개 또는 2개로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한해서 각 1인을 더하도록 하였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최소 의원 정수가 16인 미만인 광역시는 16인으로 하며 도는 15인으로 하였으며, 열 여섯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은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 미만의 면과 6000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였고 인구 1000 미만의 면과 6000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우선하여 통합하고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 선거구로 하였습니다.

열 일곱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열 여덟째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여·야 간 합의하에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姜在涉** 鄭文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전부 다 받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宋永吉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永吉 委員**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 宋永吉 위원입니다.

정당관계법 개정에 대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첫째 읍·면·동의 당 연락소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고, 둘째 창당집회개최 시 일간신문 광고대상에서 지구당은 제외하였으며, 셋째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토록 하여서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구당에 2인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선거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 연락소마다 각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직선거 여성후보 추천에 있

어 비례대표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순위 순서로 매 2인마다 1인을 여성후보로 추천하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행한 정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추천·선출 시 당원 및 후보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일곱째 중앙당은 매년 정책활동계획 및 그 집행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첫째 정당법 개정에 맞추어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중 여성을 100분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감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보조금의 감액요건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姜在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文錫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錫鎬 委員**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文錫鎬 위원입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모두 20건이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4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3건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은 3건으로 이상 30건의 법률안이 우리 의원들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2002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본위원과 權琪述 위원, 朴承國 위원, 金成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30건의 법

률안에 대하여 34개 사항의 내용으로 분류하고 2002년 2월 7일과 동년 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들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 합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의장의 당적탈퇴시기는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하되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이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되 검임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사실상 제약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국회의 예산결산심사에 있어서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결산과 예산심사를 분리하여 결산심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 내지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본회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로부터 법률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최소 1일이 경과한 후에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이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였으며, 여섯째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포된 법률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제도와 행정입법제출제도의 보완, 표결과 관련된 감표위원제도의 개선

등 의회운영제도의 부분적인 개선과 보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전 결산예비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또한 국정감사계획서의 의결 및 증인·참고인의 출석 등과 같은 국정감사 준비 내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정기국회 집회 기일 다음날이 아닌 9월 10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하였고 또한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에 있어서 국회법상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위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 종전의 서면에 의한 서류제출 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류제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였고 또는 국회의 검증실시에 있어서 검증대상기관에 대한 검증실시통보서의 발부 등 검증절차를 보완하는 등 국정감·조사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의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2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등 그간 인사청문회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하여 심사보고한 이들 4건의 각각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文錫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를 열어서 진지한 심의를 해 주셨고 또 미진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중으로 심사를 해 주셔서 진지

하게 여야가 절충한 산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진미한 안건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여러 가지 입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듬어 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그동안 우리 소위원들이 수고하신 의견을 가능하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 특별한 의견이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培淑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趙培淑 委員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수고하셨는데 제가 볼 때 착오로 누락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2의2항에 보시면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국고보조금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배분 지급한다”로만 되어 있고 지급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는 용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할당제를 이행한 정당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주는 국고보조금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추가로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법 제31조제6항에 보시면 여성에 대해서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지난 1월에 회의를 했을 때 지역구 공천 30% 부분에 기초단체장도 포함하자고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도 30% 이상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을 못 할 이유가 없고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기초단체장까지 넣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헌·당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金聖順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金聖順 委員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문제되었던 사

항인데 이런 것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뉴스전문사이트들이 요즘 새로운 언론매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보면, 오마이뉴스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서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중단시킨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전문사이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사실상 언론기관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것은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법 제82조에 의한 후보자 초청대담을 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인터넷 뉴스전문사이트를 추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소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회의로 넘기자고 해서 강하게 주장을 못 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선거연령을 현재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이러한 하향조정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20세부터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을 17세부터 발급하고 있고 병역법상 19세부터 징병검사를 받고 있고 18세부터 8·9급 공무원 응시자격과 운전면허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말 현재 파악 가능한 172개국의 선거연령을 보니까 우리같이 20세로 하고 있는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안 되고 18세가 138개국이나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발달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참고로 북한이 17세, 그래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언젠가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朴炳錫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朴炳錫 委員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3쪽을 봐 주십시오.

국회법중개정법률안 3쪽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안 제84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여 온 그간의 관례로 볼 때 이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국회 기능의 강화와 일치되고 또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예산안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와 같이 결정할 경우에 상당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상임위가 제때 열릴 수 있느냐, 그 상임위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어서 12월 18일, 2001년도 예산안이 12월 27일, 2002년도 예산안이 12월 27일에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행태를 시정하면서도 효율적인 국회운영, 특히 준예산이 편성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안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함으로써 전체위원회를 부득이 못 열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안이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선거구 문제입니다.

115쪽에 보면 대전서구 제1선거구와 대전서구 제2선거구가 있는데 현재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만 2000명인데 1선거구 가수원동에 일산, 분당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곧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1선거구와 2선거구의 인구편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선거구에 있는 도마2동과 2선거구에 있는 도마1동이 명칭에서 보듯이 1동과 2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편차로 보나 또 행정구역상으로 보나 그것은 합쳐져야 옳습니다. 그래서 서구 제1선거구에 있는 도마 2동을 서구 제2선거구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元裕哲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元裕哲 委員 元裕哲 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님들께 보고 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양당 간사가 미합의 쟁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존경하는 姜在涉 위원장님을 모시고 許泰烈 간사

님, 저 그리고 저희 당의 朴相千 특위위원장님과 함께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미합의 쟁점 중에서 지방의원 신분과 처우에 관련된 것, 지방의원 유급제라든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자율권 문제 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을 확대하는 문제 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청구징계제도 또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문제 또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선거와 관련된 법안을 오늘 정개특위에서 우선 결정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차원이고 나머지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柱宣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朴柱宣 委員 우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22조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기준에 의해서 광역의원의 정수가 14인 미만이 될 때는 정수를 14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16명 미만이 되는 경우는 16명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상 2명을 증원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이 울산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을 증원한 경우를 소상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비용 고효용의 정치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국민 대다수 뜻이 감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4년 전에 감축했기 때문에 이번에 2명을 증원하게 된 데에 대한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측면에서 논거가 없다면 증원해서는 안될 것이고 부득이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 3개 광역시 지역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3개로 되어서 지금 현재는 3, 4명 정도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임위의 운영이 현재의 수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1명 이상씩은 증원되어야지, 어떤 근거로 2명이라고 해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2개 상임위원회만 숫자를 늘리게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증원이라면 차라리 당초에 감축했던 원안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하고 만일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수는 증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과도한 부분은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것인데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근본목표가 무조건 도의원이나 시의원 다시 말해서 광역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안대로 하게 되면 현재의 광역의원 숫자보다 7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원래 상임위 숫자만큼 1명씩을 더 증원해서 3명이 더 증원된다면 4명 정도가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7명이라는 감축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에 해당되는 만큼의 숫자를 증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4명을 줄이는 효과나 7명을 줄이는 효과는 대동소이할 뿐 만 아니라 꼭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개혁특위의 목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培淑 위원님께서 30% 이상 광역지역구에 공천한 정당에 대해서 정치자금, 국고보조를 조금 더 주는데 이것을 여성정치활동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삭감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돈을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달성한 정당에 대해서 보너스 성격으로 국고보조를 더 주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달성한 정당에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당이 여성문제를 잘해서 받은 돈이니까 당연히 그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쓰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초단체장 여성할당 문제는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하다가 이번에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제외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聖順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오마이뉴스’ 등의 대통령후보들 토론 문제는 여야 간에 논의를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도 언론기관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왕 유권해석된 것을 굳이 법으로 또 박을 필요 없이,

그것은 법이 통과 안 되어도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朴炳錫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킨다든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삭감을 했는데도 국회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나 밀실에서 오물딱주물딱해 가지고 전체 상임위원들의 진지한 심의를 번복해 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여야 위원 전원일치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절차문제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원이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한번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선거구 조정문제는 좋은 말씀이고 지금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분류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구 하나를 시정하다 보면 여러 지역구에서 문제가 되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朴炳錫 위원님이 전체를 위해서 조금 참아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호소를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元裕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원 유급제, 주민소환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못 낸 문제니까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朴柱宣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인을 16인으로 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6인이 되고 비례대표 3명이 되니까 19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의장 한 분을 빼게 되면 18인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상임위원회가 3개 있으니까 한 상임위원회에 6명씩 배치되면 오히려 맞다, 그동안 어떤 상임위원회는 5명, 어떤 데는 4명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것을 박아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19명에서 의장 빼고 18명으로 6명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고 또 복잡한 배경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錫 委員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거치고 협상 끝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이 현실적, 물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조화로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결산이라는 것이, 특히 예산이라는 것이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 해가 다가는 마지막 며칠을 남겨 놓고 전격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거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따라서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상임위원장과 이러한 협의를 거치고 상임위원장은 각 당의 간사와 협의를 거친다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못 여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갖춘 것 아니냐,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져볼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在涉**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朴炳錫 委員**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즉 전체 상임위원회와 상의하는 것이 현재 개정안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상임위원장과 각 당 간사 정도의 합의를 거치면 물리적인 어려움도 해결하면서 견제장치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鄭文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文和 委員** 朴炳錫 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정책을 다룬다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빼놓고 정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은 깎아도 관계 없고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왜 구태여 예결위에서 증가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새 비목을 왜 설치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늘 다루고 있고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했으면 예

결위에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안 된다면 양 위원회가 합의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야지, 간사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許泰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泰烈 委員** 소위에서 심의를 할 적에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각 상임위에서 자기 소관부처의 정책업무보고 받고 보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 비공적 친밀감까지 가지고 있는 소속부처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된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삭감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결위 전문위원 말씀은 삭감된 예산의 83%는 그대로 삭감된 채로 간담니다. 불과 17%를 살리거나 또는 다른 비목으로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바이고 또 예결소위라는 것이 막판에 가서 밀실 야합, 담합을 했다고 모든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것 삭감된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절차가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다른 길로 가자는 것은 우리가 모처럼 개혁하겠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炳錫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에 예산결산위에 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는데 당시는 광우병 때문에 인정을 안 했다가 권위 있는 기관에서 광우병과 관계가 없다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저도 현행처럼 예산결산위원회가 그야말로 상임위원회의 뜻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깊이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炳錫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계법 관련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

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거주의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관한특례법안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朴炳錫 委員 잠깐만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반대가 있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그러면 표결해야 되는데요.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소수의견으로 朴炳錫 위원님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기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당관계법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21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며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정당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4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관계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7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6항까지 20건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4건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5항까지 3건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4항까지 4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된 법률안 중 체계·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元裕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나 주민소환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개혁적인 논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검토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出席委員(13人)

姜在涉	權琪述	金聖順	文錫鎬
朴炳錫	朴柱宣	宋永吉	吳世勳
元裕哲	李海鳳	鄭文和	趙培淑
許泰烈			

○請暇委員(1人)

金學元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입법심의원	千炳浩

○議案回附

政黨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월1일 송영길·허운나·유재건·김근태·김효석·배기운·최영희·김성순·김덕규·김원웅·박병석·박양수·원유철·추미애·이종걸·김운용·최명현·이낙연·이강래·신기남·천정배·정범구·신계륜·김명섭·안영근·정대철·장영달·장성원·정세균·김민석·정동영·조배숙·정동채 의원 발의)

2월 2일 회부됨.

○請願回附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

(2월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6 글샘빌딩 304호 정치개혁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국민경선 2030 네트워크 대표 복기왕 외 1인으로부터 任鍾哲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

2월 1일 회부됨.